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00. . . (제 회)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재산처에 특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1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7명(6급 7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고, 특허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4명(4급 또는 5급 4명, 6급 10명) 및 상표·디자인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명(6급 9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지식재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9.12.12. ~ 12.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홍보업무를”을 “디지털 홍보를”로,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으로, “임용할 수 있다”를 “임용한다”로 한다.

제39조 중 “2026년 2월 28일”을 “2028년 2월 29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595”를 “1,60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593”을 “1,60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76”을 “1,587”로 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가. 특허 심사업무	13명
나. 특허 심사업무	7명
다. 상표·디자인 심사업무	5명
라. 특허 심사업무	4명
마. 상표·디자인 심사업무	3명
바. 특허 심사업무	10명

별표 4 중 “2026년 2월 28일”을 “2028년 2월 29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 ② (생 략) ③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u>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u> (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공 무원으로 <u>임용할 수 있다.</u>	제35조(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디지털 홍보를</u> ----- <u>2명</u>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 ----- <u>임용한다.</u>
제39조(한시정원) 상표 심사를 강 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 조제1항에 따라 <u>2026년 2월 28</u> <u>일까지</u>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 을 지식재산처에 둔다.	제39조(한시정원) ----- ----- ----- ----- <u>2028년 2월 29</u> <u>일</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지식재산처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595</u>	<u>1,606</u>	+11
·	·	·	
·	·	·	
일반직 계	<u>1,593</u>	<u>1,604</u>	+1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576</u>	<u>1,587</u>	+11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33